1. 저작권 보호

저작권이란 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써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이는 무 방식 주의로서 어떠한 형식 요건이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저작물의 성립요건에서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이 존재하여 독창성과 외부성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이 저작물에는 어문, 미술,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음악,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존재하며, 기본적인 저작물에서 새롭게 다른 저작물을 창출하는 이차적 저작물이나, 여러 소재를 합해서 편집해 배열하는 편집 저작물도 존재한다. 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이며,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부여된다. 지식재산권은 이 저작재산권을 포함하는 큰 범위의 재산권을 말하며, 저작권을 포함하는 용어로써 저작권+산업재산권을 의미한다. 여기서 산업재산권은 산업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물품에 해당하는 권리로써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한다.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현재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사용되고 있다.

저작권 유형 안에는 첫 번째로 저작인격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재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권리는 의미하며,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공표권이 있으며, 이 권리는 저작권자가 공표하고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두 번째로 성명표시권이 있는데, 저작자의 별칭이나 이름을 표시함으로써 저작자를 드러내게 하는 권리이다. 세 번째는 동일성유지권으로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과 제목 등에 대해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의 특징으로는 비금전 성과 일신 전속성이 있다. 비금전 성은 저작자의 인격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재산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닌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신 전속성은 저작자에게 권리가 온전히 귀속되어 인격권이 양도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저작재산권이 존재하는데,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금전적인 관리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안에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전시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복제권은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을 할 때 발생하게 되는 권리이다. 공중송신권은 무선이나 유선으로 해당하는 저작물을 옮길 때, 다른 사람에게 송신, 제공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다. 배포권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 없이 공중에게 양도하고 대여하는 권리이며, 공연권은 상연, 연주, 가창, 연설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발생하는 권리이다. 전시권은 미술이나 사진, 건축 저작물에 발생하는 권리이며,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본 저작물을 가지고 번역, 편곡, 변형과 각색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권리이다.

세 번째로는 저작인접권이 있으며, 저작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권리이다. 저작인접권에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권리 등이 포함되며,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주, 또는 가창하는 사람들이며, 녹음, 녹화, 사진 촬영 등을 실연자가 할 때 발생하는 권리가 있다.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가 있다.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 중계방송을 할 권리가 있다.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에는 보호기간이 있으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간 보존된다. 또한 공동 저작자가 있을 때 마지막 공동 저작자가 사후 70년간 보존된다. 저작인격권의 경우 보호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데, 사후에도 유족에 의해서 인격권에 대해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강좌를 수강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울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저작권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어도 저작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념을 체득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저작물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어떤 권리에 해당하는지 몰랐었겠지만 이번 강좌를 보고 나서는 잘 분별할 수 있을 거 같다. 공대생으로서 저작권과 큰 연관이 없을 줄 알았지만, 우리가 제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해서 잘 알아놓는 편이 좋은 거 같다. 강좌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저작권에 무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작권에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야 내 저작물을 지킬 수 있는데 참 어리석었다. 이 강좌를 보는 것 말고도 저작권에 관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저작권이 강좌에 설명한 거 말고도 다른 요소가 존재할 거 같다. 확실하게 알아야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 같다.

기타 질의 사항으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소멸하는 경우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작권 침해 유형과 사례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안에 속해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저작인격권의 침해는 저작인격권 속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공표권을 어기고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공표를 해버렸다면 공표권이 침해된 것이며, 저작자의 이름이나 필명 대신 다른 이름을 표시하게 된다면 성명표시권이 침해된 것이다. 다른 내용이나 형식, 다른 제호로 발표해버리면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것이다. 저작인격권은 사후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의 침해는 사후 70년에 존속되지 않고 그 이후까지 침해로 남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저작재산권 안에 있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대여권 중 하나라도 침해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에 인터넷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저작인접권의 침해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 인접 자의 허락 없이 실연이나 음반, 방송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배포 목적으로 어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소지만 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이며, 저작권 프로그램 복제물을 이용하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자를 명예훼손 한 것도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재판 절차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재판에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한된다. 그리고 정치적 연설, 학교 교육, 시사 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에서의 저작물 사용 또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일도 있다.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보호조치와 저작권 보호 기술이 존재한다. 기술적인 보호조치는 저작물에 대해서 접근제한 및 복제, 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인 조치이며, 이용통제와 접근 통제가 존재한다. 저작권 보호 기술에는 저작권 콘텐츠 암호화(DRM), 복제방지기술(CCI), 디지털 워터마킹, 포렌식, 콘텐츠 필터링 기술이 존재한다.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 제도가 있으며, 저작권 등록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을 받는 절차이며, 나중에 저작권 침해가 되었을 때 저작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 침해 시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책임에 관해 물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데 저작권자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서 저작권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들에 대해서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분쟁조정 및 권리침해 구제제도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르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찾아봐야 한다. 또한 CCL 마크의 허용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권리자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블로그나 카페 배경음악용 음악을 사서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때도 권리자의 별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 자유 이용 사이트에서 어느 범위까지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용돼있는 것을 찾아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도 침해가 되지 않는다. 종합해보면 저작물을 올바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해당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저작권법상에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번 강좌를 통해 저작권 침해 유형과 사례에 대해 배웠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저작권 침해가 될만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았다. 아무리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려고 해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좀 무섭다. 지금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침해하고 있지 않을까 계속 생각이 든다. 진짜 조심하면서 저작물에 대해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물을 막 사용하지 않고, 출처를 확인하고, 내가 사용해도 되는지 일일이 확인해봐야겠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작권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이었다. 위에서 설명한 사이트 외에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겠다. 지금까지 저작권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강좌를 통해 그런 생각이 확 깨져버렸다. 이번 강좌가 아니었으면 계속 저작권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었을 거 같다. 참으로 고마운 강좌였다.

기타 질의 사항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막는 방법으로는 위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